

2019 전주영상위원회 영상콘텐츠 구축사업

-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지원사업-

전주지역 영상문화예술 활성화 및 저변층 영상문화 촉진을 위한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
(사)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

1. 사업공고

가. 사업명 : 2019 전주영상위원회 영상콘텐츠 구축사업-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지원사업

나. 주최/주관 : 전주시/(사)전주영상위원회

다. 내 용 : 전주영상문화 단체/동아리 등을 위한 영상창작, 영상예술기반 및 문화 활동 지원

라. 지원내용 : 지원사업당 최대 4백만원 지원(총 2개 단체) *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단체 수 및 지원금 변동 가능

마. 신청대상 : 전주 내 영상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(3인 이상)

바. 지원자격

(1)전주시에 거점을 둔 비영리단체 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소유)로 1년 이상 영상관련 활동을 해온 단체

(2) 전주 연고로 구성된 단체(대표를 포함한 전주 연고 기준이 구성원의 50% 이상)로서 영상문화관련 활동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단체

* (1), (2)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원가능

전주 연고 기준

- 전주 출생자
- 전주 소재 학교 재학생/휴학생/졸업생
- 전주 거주자(공고일 기준)
- 전주 소재 직장 근무자

사. 지원분야 : 지역영상예술창작, 영화예술기반구축, 영상예술교류활동

- 단, 단편영화/다큐멘터리 분야는 지원 불가

아. 지원불가

-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별도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
- 순수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종교단체, 언론사 등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

- 이전 공고에서 탈락한 단체는 동일 사업명(활동명)으로 재지원 불가

- 동일단체가 2개 이상의 활동 신청 시, 신청 활동 전체 취소(1 단체 당 1활동 지원)

2. 지원신청

가. 공고기간 : 2019. 8.09(금) ~ 8.20(화)

나. 접수기간 : 2019. 8.09(금) ~ 8.20(화)

다. 접수방법 : 이메일 (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)

-email jjfcpr@naver.com

*메일 제목 작성 예시 : 영상콘텐츠구축사업_000(팀명/신청자명)

라. 신청서류(필수)

연번	내용	비고
①	·지원신청서	소정양식
②	·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	
③	·단체 소개서 및 활동 실적(증명)내역 각 1부	
④	·개인정보 활용 동의서(신청자) 및 단체회원명단 1부(구성원 자필서명 포함)	
⑤	·전주 연고 증빙서류(주민등록초본, 재학졸업증명서 등)	자유양식

- ※ 사업예산서는 별첨된 사업비 기준 표에 근거하여 작성
- ※ 단체 활동 실적(증명) 내역은 현재까지 활동내역과(2회 이상)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스캔해서 첨부
(예, 리플릿, 현수막, 기타 보도자료, 증명서, 활동사진 등)
- ※ 서명(도장)이 포함된 경우 스캔하여 첨부 (사진촬영 불가)/서명 없을 경우 신청 취소

3. 지원신청 서류 제출 방법

- 신청서류 ① ~ ⑤번까지 개별로 작성한 후 압축하여 접수(1개의 파일로 합치지 말 것/파일제목명시)
 - ※ 서명(도장)이 포함된 경우 스캔하여 첨부 (사진촬영 불가)/서명 없을 경우 신청 취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/수정/교환 불가하며, 미비서류에 대해서 별도 안내 없이 서류 심사 제외

4.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일정

- 가. 심사위원회 구성 : 문화 및 영상관련 관계자 3인으로 구성
- 나. 심사방법 : 심사위원회 구성 → 1차(서류)심사 → 최종 단체 선정 및 발표
- 다. 심사일정 : 2019. 8. 21 ~ 8. 27(예정)
- 라. 최종 합격자 발표 : 2019. 8. 28(예정)
- 마. 심사기준 : 적절성, 사업 실현가능성, 단체 활동 내역 등
 - ※ 적합한 단체가 없을 시,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5. 지원금의 지급방식

-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제출 후 지원금 전액지급

6. 지원조건

- 모든 지원 사업은 2019. 11. 15까지 종료
- 사업종료 후에는 정산 및 성과보고서(결과물) 제출
- 제출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동의
- 지원금액은 단체의 경상비, 자산취득경비, 단체의 대표자 및 단체소속회원에게 보조금(인건비) 집행 불가
- 지원금 집행 시 별도통장 개설과 (사)전주영상위원회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
-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, 조작 및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전주영상위원회 사업에 5년간 지원 불가
- 지원금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
(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- 발급수수료 지원금액에 불포함)
-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원금 전용 통장은 단체 대표 또는 회장 이름으로 발급
- 결과물 및 사업진행 홍보물에 (사)전주영상위원회/전주시 문구 포함

7. 지원취소 및 반환사유

- 가.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

- 나. 지원금을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
 - 다.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
 - 라. 지원신청 시 제출했던 기획내용이 사전 협의 없이 다르게 제작한 경우
 - 마. 심사과정에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경우
 - 바. 기타 지원약정서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
- *지원 대상 과제로 확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에 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작품에 대한 지원결정을 취소하고, 지원금을 회수

8. 제작 취소에 따른 제재

- 가. 제재대상 : 단체
- 나. 제재내용 : 지원금의 전액반환과 (사)전주영상위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5년간 지원 불가

9. 문의

- (사)전주영상위원회 기획홍보실 [전주영상위원회 영상콘텐츠 구축사업 담당자 ☎ 063-286-0421(내선번호 1)]